

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

이성규*
(캘리포니아대학교)

김재형
(캘리포니아대학교)

김일순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 담배소송의 쟁점사항인 KT&G 담배제품 속 첨가물 및 니코틴 조작 유무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1988년 이후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해 KT&G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내부기밀문건을 분석했다.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한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우리 국민들의 보수적 성향과 수입담배 불매운동 등으로 자사 제품의 수요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인구집단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거나, 담배 자판기를 설치해 제품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또한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KT&G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KT&G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문건 속 성분분석 결과에는 KT&G가 소송 중 부인해왔던 암모니아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라이트” 제품으로 판매됐던 담배제품과 일반 담배제품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1999년 담배소송이 제기되자 KT&G 측은 경쟁관계에 있던 다국적 담배회사에 소송대응을 위한 전략과 관련해 조언을 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KT&G 담배제품에는 니코틴의 인체흡수를 촉진하는 암모니아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담배성분 검증절차를 거쳐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담배회사들 조차도 담배소송문제에 있어서만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법원과 보건 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소송대응 전략 및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야할 것이다.

주요용어: 담배, 담배소송, 담배회사 내부문건, 담배성분, 담배규제

본 논문은 이성규의 박사학위논문(The Tobacco Industry in South Korea Since Market Liberalisation: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obacco Control, 2011) 연구결과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연구 진행 중 담배소송관련 자료제공 및 귀한 조언을 해주신 배금자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이성규, 캘리포니아대학교(www.vince77@gmail.com)

■ 투고일: 2012.5.10 ■ 수정일: 2012.8.10 ■ 게재확정일: 2012.8.24

I. 연구배경 및 목적

1. 미국 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기밀문건

1954년부터 시작된 미국 내 담배소송에서는 흡연이 건강의 위해요소(risk factor)임을 단정 지을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담배회사가 줄곧 승소 해왔다. 1964년 발표된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는 흡연이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공표함으로써(US Department of Health, 1964) 미국 내 흡연율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Giovino et al., 1994) 담배소송 판결을 뒤집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제조물 책임이론¹⁾’이 미국 담배소송에 새로운 돌과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다(배금자, 1999). 하지만 이러한 법리에 대해 거대 담배회사들은 1965년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삽입해온 경고문구(health warning label)를 제시하며 맞섰다. 담배회사들은 경고문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흡연자들에게 알려왔기 때문에 설사 흡연으로 질병이 기인되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경고를 무시하고 흡연행위를 지속한 흡연자 개인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담배회사들의 주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담배회사들은 담배소송에서 승소행진을 거듭할 수 있었다(배금자, 1999).

미국 내 담배소송에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담배회사 내부기밀문건(confidential documents)의 공개였다. Brown and Williamson(B&W) 담배회사의 직원이 담배회사의 부도덕한 행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B&W의 내부기밀문건을 학계와 언론에 제보했고 이 문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Glantz et al., 1995)가 1995년 7월 미국 의학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됨에 따라 미국 담배소송에 지각변동을 몰고 왔다. 흡연과 특정질환 간의 관련성을 다양한 전략으로 부정해왔던 담배회사들도 자신들의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인 전략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없었다. 그 결과 담배회사들은 천문학적인 배상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미국 내 담배소송은 무려 40년 이상 거대 담배회사의 전략과 자금력을 뛰어 넘지 못하고 매번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왔지만 담배회사의 내부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대역전

1) 제조물 책임이론: 유해 제조물을 생산한 제조사에 무과실 책임을 묻는 법률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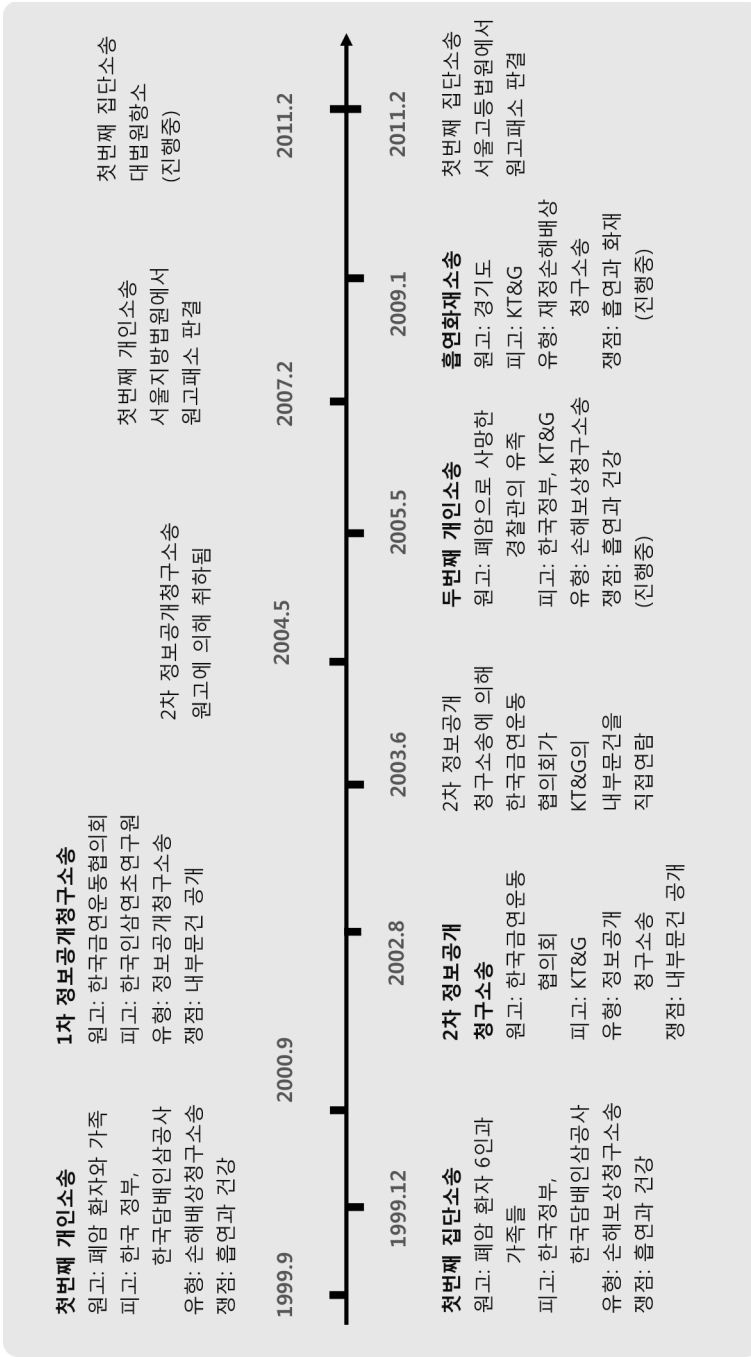
극이 가능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소송 결과는 정부, 정책입안자, 대중의 생각까지 움직임으로써 오늘날 미국 내 강력한 담배규제정책이 도입되는데 기여했다.

2. 국내 담배소송과 쟁점

2012년 4월 현재까지 국내 담배 관련 소송은 4건이 제기되었다(그림 1). 1999년 9월 장기간 흡연한 폐암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Korea Tomorrow & Global Corporation)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6명의 장기흡연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한편 2005년 5월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관 유족들이 고인은 경찰관 복무 당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장기간 흡연하였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가장 최근인 2009년 1월에는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 2009).

1999년 9월에 시작된 국내 최초 담배소송은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 후 종료됐다. 같은 해 12월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까지 무려 8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항소심 역시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 소송은 2012년 4월 현재 대법원에서 3심 계류 중이다(대법원, 2011). 2005년 5월 경찰관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은 2011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후 항소심 계류 중이고(서울고등법원, 2012), 2009년 경기도의 담배꽁초 화재관련 소송은 2012년 4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09).

그림 1. 국내 담배소송 연대표



1999년 12월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는 원고인 6명의 폐암환자들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전매청과 이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제품을 20년 이상 흡연하여 왔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 원고들의 개별 폐암 원인을 흡연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며, 제조물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담배제조사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고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7). 2007년 2월 1심 패소 후 원고 측은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부 원고의 폐암 원인을 흡연으로 인정하였지만,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11).

집단담배소송에서 제조물 책임이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원고 측 전략은 미국 담배소송을 교훈 삼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내부분건을 조사하려는 것이었다(배금자, 2004). 이는 미국 사례처럼 내부기밀문건 속에서 담배제품의 결함, 고의적인 정보은폐 등의 위법행위를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한국담배인삼공사(2002년 이후 KT&G)가 내부분건 공개를 거부하자 원고 측은 집단소송과 별도로 두 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2000년 9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주요 문서목록 제출의 요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해당 연구원은 197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작성된 520여 건의 주요 문서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 측은 78년 이전 자료의 미공개와 제출된 주요 문서목록 중 누락부분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추가제출을 요구하던 중, 2002년 2월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해산되고 한국담배인삼공사에 합병되자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취하였다. 이후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002년 8월에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2차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2차 정보공개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 측에 2003년 6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1978년 이후 주요문서목록 중 259건에 대해 직접 열람을 허가하였으며, 정보공개 판결을 앞두고 있던 중 헌법재판소의 관련법률 위헌판결로 판결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담배소송 1심 재판부가 2004년 2월 19일 KT&G중앙연구원에 직접 현장 검증 및 서증조사를 실시한 후, 2004년 4월 30일 464건의 담배연구문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원고 측은 786건의 문서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분류한 문건을 제외한 464건만 제출하도록 명령했다(배금자, 2011).

자료 열람 결과를 근거로 원고 측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상당한 양의 담배연구를 진행했으며 해외 담배연구 관련 문건을 수집해 담배의 유해성, 발암성, 중독성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1978년 설립 당시부터 이미 담배연기의 해로움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산담배에 대한 국산담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담배의 성분분석 및 국내외 담배제품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에 왔다. 하지만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국산 담배제품의 질을 외산담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니코틴 중독을 촉진하는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김일순, 2003).

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KT&G 담배제품 속 첨가물 및 니코틴 조작 유무를 확인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도 미국의 유사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피고 측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을 직접 조사하여야 하나, 2012년 4월 현재 KT&G의 내부문건은 여전히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이후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해 KT&G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다국적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을 조사했다.

KT&G가 경쟁사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였듯이(김일순, 2003), 다국적 담배회사들 역시 우리나라 담배시장 진입 후 국내 흡연자의 입맛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담배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중 KT&G와 관련된 문건을 조사했다.

II. 연구방법

담배회사 내부기밀문서가 일반에 공개된 과정은 연구배경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고,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다(Mackenzie et al., 2003; 이성규, 2012). 이들 내부문건은 3가지 경로를 통해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다. 첫째는 1998년 ‘미네소타 화해 판결(Minnesota Consent Judgment)’을 통해 설치된 미국 미

네소타 문서보관소(Minnesota Depository)와 영국 길포드 문서보관소(Guildford Depository)를 직접 방문해 필요한 문서를 현장에서 열람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두 곳 모두 담배회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감시되고 있는 등 담배회사들의 방해전략들로 인해 실제 문서 검색 및 열람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ackenzie et al., 2003).

두 번째는 담배회사와 미국 주립정부들 간의 담배회사 내부분건 관련 합의안(Master Settlement Agreement: MSA)을 근거로 일부 담배회사와 담배관련 연구소에서 내부분건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또한 문서검색과 문서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실제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이성규, 2012).

끝으로 담배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문서보관소와 담배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2021년 이후 문서공개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금연관련 연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담배회사 내부분건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온라인 레거시 담배문서 도서관(Legacy Tobacco Documents Library: LTDL - www.legacy.library.ucsf.edu)을 통해 내부분건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LTDL을 통한 방법이 담배회사 내부분건 연구를 위해 가장 추천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LTDL의 담배회사 내부분건을 “Korea+litigation”, “Korea+tobacco lawsuit”, “Bae Kum Ja2)” 3가지 검색어를 사용해 954건의 문서를 수집하여, 그 중 문서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언론보도자료를 스크랩한 문서, 그리고 본 연구주제와 부합되지 않는 문서들을 제외 한 103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담배시장개방”, “담배회사전략”, “담배제품개발” 3가지의 소주제로 관련문서를 분류했고, 이를 토대로 문건 내용을 분석했다. 문건 속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1980년 후반, 1990년 초반 보도된 담배시장개방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활용했다.

2) Bae, Kum Ja: 국내 집단담배소송 책임 변호사

Ⅲ. 연구결과

1. 다국적 담배회사의 시장 개방 노력

1988년 5월 이전까지 우리나라 담배시장은 외국산 담배에 대한 높은 무역관세와 일반인들의 외산담배 구입 및 흡연금지를 통해 다국적 담배회사의 시장진입을 철저히 봉쇄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태국, 대만의 담배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1981년 미국 담배수출연합(US Cigarette Export Association: USCEA)을 설립하고 미국정부를 상대로 체계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다(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0).

로비의 대상은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비롯해 레이건 대통령까지 광범위했다. 담배회사의 로비활동 결과 미 상원의원 10명(Mitch McConnell, Mark Andrews, Wendell H. Ford, Ernest F. Hollings, Bob Packwood, Paul S. Trible, Jr., Jesse Helms, John P. East, Mack Mattingly, and John Warner(Pepples, 1985))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에 담배시장 개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B&W 내부문건에 보관되어 있는 이들 10명의 상원의원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발송한 편지 내용에는 1985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전두환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시 한국 내 미국산 담배에 대한 “차별적” 무역장벽을 즉시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The methods used to prevent U.S. access to the Republic of Korea's tobacco market are not as crude as an outright ban on importation, but through a 100 percent ad valorem tax tariff barrier and such non-tariff barriers as civil and criminal sanctions against Korean nationals possessing cigarettes of American manufacture, a state tobacco distribution and wholesale monopoly, and restrictions against the importation of quality U.S. grown leaf tobacco. ... We would hope that some form of an "agreement in principle" could be reached during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visit. This 'agreement' could allow for more U.S. leaf imports, increase retail outlets for American cigarettes in, say, larger metropolitan areas, and a relaxing of sanctions against the possession of American cigarettes(East et al., 1985).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미국 정부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도 로비활동을 전개했다. 1980년대 당시 우리 정부는 정치, 경제, 군사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여기에 미국의 무역역조현상까지 심화되면서, 미국계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우리나라가 담배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대미 섬유 및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압력을 가했다. Philip Morris(PM)의 로비스트로 활약했던 마이클 디버(Michael Deaver)는 전두환 대통령을 대면한 자리에서 “The [Korean] tobacco issue was tied to the Korean textile exports to US”라고 압력을 가했다(East et al., 1985). 결국 1988년 5월 27일 한국과 미국정부는 담배시장개방과 관련한 협약(Record of Understanding)을 체결했다.

2. 다국적 담배회사 수요창출 전략

담배시장 개방 이후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 우리나라 내 자사 제품의 수요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시장개방 직후 “외산 담배 불매운동”, “우리 담배피기 운동”과 같은 반외산담배 활동과 정서가 담배업계, 담배농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 나갔고 심지어 외산담배를 흡연하는 사람은 “매국노”로 치부됐다. 이러한 시장상황 속에서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특단의 조치로 특정 계층, 즉 20대의 젊은 성인 및 여성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에 초점을 맞췄고(Lee et al., 2009), 흡연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만의 브랜드를 선택하지 못한 “흡연시작그룹(starter)”을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 삼았다(Philip Morris, 1990a).

주로 나이가 많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노년층이 운영하는 담배소매점의 경우 외산담배를 진열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국적 담배회사는 담배자판기 설치를 통해 제품공급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그 결과 시장 개방 이전인 1980년 전국적으로 392대에 불과했던 담배자판기는 시장 개방 후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R. J. Reynolds(RJR)는 1989년 한해 약 3000대의 담배자판기를 서울 및 대도시에 설치했고, PM은 같은 시기 4000대의 자판기를 설치했다(Song, 2009). 당시 담배소매점 외에 담배제품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나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담배자판기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자사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외산담배 한 보루를 구입할 경우 법으로 정한 한도 이상의 고가 증정

품을 소비자에게 주는가 하면(Philip Morris, 1990b), 기업 이미지 및 제품의 간접홍보를 위해 담배제품이 아닌 모자, 옷 등에 담배회사 및 브랜드 로고를 세기거나(Business Risks, 1991), 문화행사를 후원하는 전략을 통해 수요창출 노력을 기울였다(Philip Morris, 1993).

3. 다국적 담배회사의 지역화된 담배제품개발: 국산담배 성분분석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수요창출 전략과 더불어 다국적 담배회사는 우리나라 흡연자의 기호에 맞는 “지역화된(localized)” 담배제품 개발을 위해 심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시장 개방 초기 외산담배가 너무 “독하다”는 선입견이 시장에 팽배했기 때문이다(Kim, 1986). “순한 담배”와 “독한 담배”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PM의 내부문건에서는 10mg의 타르 함유량을 기준으로 일반제품(regular tobacco)과 저타르제품(low tar tobacco)을 구분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나라 흡연자의 대다수는 저타르 제품(타르 10mg 이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PM은 인지하고 있었다. B&W 역시 한국 내 담배시장이 타르 5mg의 저타르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주력 브랜드인 Kent와 Finesse의 “라이트 버전”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oration, 1995).

표 2. 저타르 외산담배 시장점유율, 1989~1991년

(단위: %)

구분	1989년	1990년	1991년
타르 11mg 이상 제품	21.9	19.2	18.3
저타르 제품	78.1	80.8	81.7

자료: Philip Morris(1989).

이렇듯 수요창출을 위해 철저한 시장조사를 근거로 전략을 세운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지역화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국산 담배제품의 성분분석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시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흡연자들이 순하고 향이 풍부한 담배를 선호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당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한국담배인산공사의 담배제품들과 유사한 담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Leong & Pak, 1991; British

American Tobacco, Unknownna). 1991년 PM의 내부문건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88 라이트(88 Lights)와 유사한 저타르, 저니코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Our new product development objective is to develop an LTN [lower tar and nicotine] products which flavour system will appeal to 88 Lights smokers at the same time to deliver a claimable level of lower nicotine(Leong & Pak, 1991).

2000년 4월 6일 작성된 B&W의 “Korea Technical Review 1998-1999/312” 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을 통해 실제로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국산 담배에 대한 성분분석을 진행하여 온 것과, 국산 담배 속에 어떤 첨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비교적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Reasor, 2000a). 뿐만 아니라 2000년 4월 7일 작성된 “The Korea Competitive Monitoring”이란 제목의 문서에는 한국시장 내 PM의 경쟁브랜드 13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연간 6차례 실시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고, 13제품의 목록에는 5종의 한국담배인삼공사 제품³⁾과 6종의 PM 제품, 그 외 각각 1종씩의 Japan Tobacco(JT)와 RJR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었다(Reasor, 2000b).

B&W의 Korea Technical Review에는 88 라이트, 에세 슈퍼슬림(Esse Super Slims), 심플 슬림(Simple Slimes), 시나브로, 디스, 그리고 디스 플러스의 혼합화학성분정보(blend chemistry data), 설탕 및 담배종이에 관한 정보(sugars and casing data), 담배연기 속 성분정보(smoke delivery data), 끝으로 제품 디자인정보(design data)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그림 3)(Reasor, 2000a). 또한 BAT의 1989년 3월 10일 내부문건에는 1989년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품에 대한 간략한 제품 분석결과(제품별 외형, 포장, 필터, 인체전달 물질)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4)(Cousins, 1989).

3)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제품 5종: 에세, 심플, 시나브로, 디스, 디스 플러스

그림 3.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제품 성분표

Brand	Alkaloids (%)	Nitrates (%)	Phosphates (%)	Chlorides (%)	Ammonia (%)
Eighty Eight Lights KS	2.9	1.0	0.60	1.07	0.05
Esse Super Slims	2.6	0.8	0.54	0.93	0.03
Simple Slims 100 Box	2.6	1.0	0.59	1.09	0.04
Sinabro 100 Box	2.6	1.1	0.62	1.16	0.11
Sinabro KS	2.5	1.1	0.62	1.18	0.09
Sinabro KS Box	2.4	1.1	0.63	0.97	Below Det.
This KS	2.6	1.0	0.58	0.95	0.04
This Plus KS	2.7	1.0	0.60	1.05	Below Det.

Brand	Tar (mg)	Tar/Puff (mg)	Nicotine (mg)	Nic/Puff (mg)	Puffs (mg)	CO (mg)	Charcoal (mg)
Eighty Eight Lights KS	8.1	1.0	0.8	0.10	8.3	8.0	127
Esse Super Slims	7.3	1.0	0.7	0.10	7.3	5.1	—
Simple Slims 100 Box	6.6	0.8	0.7	0.07	8.8	4.9	—
Sinabro 100 Box	7.9	0.9	0.7	0.07	9.2	9.0	126
Sinabro KS (July 1999)	8.7	1.2	0.6	0.08	7.4	8.3	143
Sinabro KS Box (November 1999)	9.2	1.2	0.6	0.08	7.7	8.9	112
This KS	7.6	0.9	0.7	0.09	8.3	6.3	25
This Plus KS	7.1	0.9	0.7	0.09	7.7	6.4	23

Brand	Red. Sugars (%)	Total Sugars (%)	Fructose (%)	Glucose (%)	Sucrose (%)	Cocoa (%)	Licorice (%)	PG (%)	Glycerin (%)
Eighty Eight Lights KS	5.4	5.8	3.4	2.0	0.4	0.15	0.81	0.8	1.3
Esse Super Slims	6.2	6.6	3.9	2.3	0.4	0.14	0.73	1.2	1.9
Simple Slims 100 Box	5.7	6.2	3.6	2.1	0.5	0.14	0.83	1.0	1.6
Sinabro 100 Box	5.8	6.3	3.5	2.3	0.5	0.17	0.91	1.4	1.7
Sinabro KS	5.0	5.5	3.1	1.9	0.6	0.23	0.74	1.5	1.7
Sinabro KS Box	6.9	7.5	4.1	2.7	0.6	0.13	0.76	1.4	2.1
This KS	7.9	8.6	4.6	3.2	0.7	0.15	0.88	0.6	1.7
This Plus KS	6.3	6.9	3.9	2.4	0.6	0.14	0.72	0.9	0.9

자료: Reasor(2000a).

88 라이트, 에세, 심플, 시나브로군, 디스군 모두에서 알카로이드(Alkaloids)가 2.4~2.9%, 질산염 (Nitrates)이 0.8~1.1%, 인산염(Phosphates) 0.54~0.63%, 염화물 (Chlorides) 0.93~1.18%가 포함되어 있었다. 암모니아(Ammonia)는 시나브로 킹사이즈 박스(Sinabro KS Box)와 디스 플러스 킹사이즈(This Plus KS)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서 0.03-0.11%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대상 모든 제품에서는 여러 형태의 당(Sugar)이 포함되어 있었고, 코코아(Cocoa) 역시 0.13~0.23%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 담배제품에서 발생하는 연기 속 성분에는 타르가 6.6~9.2mg, 니코틴이 0.6~0.8mg, 일산화탄소가 적게는 4.9mg에서 많게는 9.2mg이 함유되어 있었다.

그림 4.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제품 성분표

<u>South Korean Brands (Monopoly)</u>					
	88	88Lights	Pine Tree	Pine Tree Gold Lights	Balloon Flavour
Length (mm)	84	84	83	83	83
Rod Length (mm)	60	60	59	59	59
Filter length (mm)	24	24	24	24	24
Tipping length (mm)	29	29	30	29	29
Circumference (mm)	24.57	24.77	24.43	24.48	24.68
Paper Permeability (C.U.)	44	31	44	33	75
Filter Type	CA	Triple gran.C	CA	CA	CA
Filter Ventilation (%)	22.6	(20.6)*	29.5	25.7	30.3
Density (mg/cc) -	252	247	256	250	261
Total PD (mm w.g.)	115	100	107	101	108
Rod P.D. (mm w.g.)	59	51	60	45	54
Filter P.D. (mm w.g.)	81	70	84	80	81
Reed. moisture (%)	13.0	12.4	12.6	14.1	11.8
Blend nicotine (%)	2.19	2.01	2.17	1.93	1.66
Blend R. Sugars (%)	13.5	10.8	12.6	13.5	15.0
Blend T. Sugars (%)	15.7	12.1	14.3	14.8	16.0
PMWF (mg/cig.)	11.1	9.5	11.7	11.8	10.3
Nicotine (mg/cig.)	0.96	0.72	1.00	0.96	0.84
CO (mg/cig.)	12.1	12.9	14.6	14.3	11.1
Puff No	8.9	7.9	9.6	9.8	8.8

자료: Cousins(1989).

[그림 4]에 제시된 BAT의 한국 담배 성분분석 결과에서는 88과 88 라이트의 성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라이트, 즉 “순한 담배”,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로 홍보됐던 88 라이트가 88과 비교해 타르량(PMWNF: 타르의 학문적 용어)은 단지 1.6mg/cigarette(88: 11.1mg, 88 Lights: 9.5mg) 차이가 났고, 니코틴 역시 88이 0.96mg/cigarette인데 비해 88 라이트는 0.72mg/cigarette이었다. 88과 솔 골드 라이트(Pine

Tree Gold Lights)를 비교하면 “라이트”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솔 골드 라이트가 88보다 타르량은 0.8mg/cigarette 더 많고 니코틴양은 0.96mg/cigarette으로 동일했다.

다국적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을 조사한 결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자사 담배제품의 맛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작성된 “Smokes free of tar and nicotine still lacking in taste”라는 제목의 PM 내부문건에는 2000년에 한국담배인삼공사가 1mg 저타르, 0.1mg 저니코틴 제품을 출시할 예정에 있지만 여전히 담배맛이 부족하여서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Cigarettes virtually free of tar and nicotine expected to debut next year will contain 1 mg tar, compared with 6-7 mgs in ordinary cigarettes and have 0.1 mg nicotine, lower than the 0.6 - 0.7mg in regular ones, but lacks the taste unique to ordinary cigarettes . Korea Tobacco and Ginseng Corp., manufacturer of the “health cigarette” is now working on improving the taste(Philip Morris, 1999).

또한 1992년 작성된 “Vanilla Cigarette”이란 제목의 PM 문서에는 “한국 흡연자들은 타르함량 6~9mg의 ‘순한(milder)’ 담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에 바닐라향을 첨가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한라산, 하나로, 엑스포 골드 같은 제품은 “상당한(significant)”양의 바닐라 혹은 바닐라향이 첨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제품들 중 어느 한 제품도 바닐라향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제품은 없다고 문건은 기록하고 있다(Philip Morris, 1992).

이러한 한국 담배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를 근거로 다국적 담배회사들도 지역화가 가능한 제품개발에 돌입했다. 그 예로 PM은 한국시장 내 주력 브랜드를 말보로 레드(Marlboro Red)에서 말보로 라이트(Marlboro Lights)로 변경하고(British American Tobacco, 1995) 이후 말보로 레드 역시 일반적인 타르 함유량 16mg에서 13.5mg으로 하향조정했다(Philip Morris Asia, Unknown).

4. 담배소송 대응을 위한 담배회사간 협력

1999년 9월 국내 첫 번째 담배소송이 제기된 후 한국인삼연초연구소의 이동욱 박사는 담배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해 “a big headache”라고 표현하며 PM과 JT에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소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송대응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내용도 1999년 9월 9일 작성된 PM의 내부서신에서 발견됐다(Zhang, 1999). 이러한 도움 요청에 대해 PM 역시 한국 상황을 더욱 잘 알고 있는 PM Korea에 자문을 다시 요청하거나 PM 내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을 찾겠다고 응했다(그림 5).

그림 5. 한국인삼연초연구소가 PM에 담배소송 관련 도움을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는 PM의 내부 서신

From: Zhang, Mingda
Sent: Thursday, September 09, 1999 5:11 PM
To: Christopher, John
Cc: Sanders, Edward; Woodward, Ellis
Subject: Conversation with Dr. Lee of Korean Ginseng and Tobacco Research Institute (KGTRI)

Dear John,

As mentioned earlier I just had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Dr. Lee, Dong Wook, Director, Division of Chemical Research, Korea Ginseng & Tobacco Research Institute. Dr. Lee mentioned that they are having “a big headache” with the reported lawsuit by a Korean smoker against KT&G. He said that since it is the first time KT&G is facing such a lawsuit they have little experience in handling such issues. Dr. Lee told me that they are currently considering to ask for assistance from PM and JT.

I informed Dr. Lee that if KT&G decides to seek PM's assistance in this matter they can contact PM Korea; or if he prefers, I would be happy to put him into contact with the appropriate individuals in PM.

Please contact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dditional information.

Best regards,

Mingda

자료: Zhang(1999).

치열한 경쟁관계였던 담배회사간 이러한 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1988년 이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WHO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가 간접흡연과 폐암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들의 연구결과가 직접흡연 뿐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폐암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쪽으로 흘러감에 따라 담배회사들이 동맹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PM 소속 담배연구자였던 로저 워크(Roger Walk)를 중심으로 1996년부터 담배회사들은 협력을 통해 IARC의 연구결과를 반박하는 연구 및 전략을 세워 왔고 Asian Regional Tobacco Industry Scientists(ARTIST)라는 연구단체를 구성하기도 했다(Lee et al., 2012).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이동욱 박사 역시 ARTIST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기 때문에(Ong & Glantz, 2000; Tong & Glantz, 2004) 이런 배경에서 이동욱 박사 역시 경쟁상대였던 PM과 JT에 담배소송을 대응하기 위한 도움 요청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IV. 고찰

미국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담배소송의 판결 결과는 담배규제정책 도입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담배소송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보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12년 4월 현재 일반의 접근이 불가능한 KT&G의 내부문건을 대신해 1988년 담배시장개방 이후 KT&G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내부문건을 분석했다.

담배시장개방 후 시장 내 팽배했던 반외산담배 감정으로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한국 시장에서 자사 담배제품들의 수요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인구집단을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 삼거나, 담배자판기를 이용한 제품공급 확대, 담배 이외의 제품에 자사제품 혹은 회사로고를 홍보하는 간접적인 전략들을 사용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국적 담배회사의 지역화된 담배제품 개발을 위해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은 신중하고 철저했을 것이다.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분석결과 첫째, KT&G 담배제품에도 암모니아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첨가물들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둘째 “순한” 담배로 홍보되었던 제품들이 일반 담배와 비교해 타르량과 니코틴량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2심 판결이 선고된 집단 담배소송에서 KT&G 측은 여전히 자사 제품에 니코틴 중독을 촉진시키는 암모니아와 같은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설탕, 코코아와 같은 첨가물의 사용은 인정하면서 그 목적은 단순히 담배맛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2011). 하지만 본 연구결과 KT&G 제품 다수에서 암모니아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암모니아는 담배잎에 포함된 니코틴의 순도를 높이고 알카리성을 높여 니코틴의 인체흡수율과 중독성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oration, Unknownb). 담배잎 자체에서도 미량의 암모니아가 검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단순히 암모니아가 검출된 사실만으로 KT&G의 니코틴 조작에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담배소송과정에서 담배 첨가물 및 니코틴 조작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암모니아 이외의 다른 첨가물, 설탕, 코코아 등에 대한 KT&G의 진술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KT&G의 주장처럼 여러 종류의 설탕류와 코코아가 담배제품에 첨가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첨가물의 역할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단순히 담배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코코아는 기관지를 확장시켜 더 많은 니코틴이 폐 속으로 흡수 될 수 있도록 하여 니코틴의 인체흡수율과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설탕, 감초(Licorice)와 같은 첨가물 역시 니코틴과 결합하여 니코틴의 인체흡수율을 높이고 담배를 흡입하는 횟수를 늘리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ates et al., 1999).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에 대한 법원의 인지도 향상이 절실하고 이를 통해 소송 중 제기되는 여러 가지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보다 정확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실제 담배맛 향상을 목적으로 첨가되는 바닐라의 경우 88, 88 라이트, 디스, 에세 등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1990년대 초에 판매되기 시작한 엑스포, 하나로, 한라산에서는 상당한 양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4월 16일 한 언론사 TV 프로그램을 통해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에 대한 진실이 공개됐다. “순한” 담배로 홍보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통해 밝혀낸 진실은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의 실제 타르 및 니코틴 함유량은 조사방법이나 법적 허용오차범위로 인해 광고내용과 실제 사이에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 언론보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담배제품 판매 당시 “라이트”로 홍보하고 명명했던 제품들의 실제 타르,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담배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

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저타르, 저니코틴이란 표현은 1980년대부터 담배회사가 건강을 염려하는 흡연자들의 금연시도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도입된 것이 밝혀졌다 (Cataldo & Malone, 2008). 이런 이유에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과 2009년 시행된 미국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and Prevention Tobacco Control Act)에서는 이들 표현을 담배제품 이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용어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법원 상고 계류 중인 집단 담배소송이 정의롭고 독립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담배회사의 소송개입 시도를 철저히 봉쇄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담배회사의 소송개입전략이 적발되거나 이들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선행연구 (Cataldo & Malone, 2008)와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담배회사의 소송 개입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고 법원은 이러한 활동을 특별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담배소송, 담배 속 첨가물에 대한 논의가 담배회사의 정보은폐를 밝혀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된 국산담배 첨가물의 농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분석하는 것이 추가 연구를 통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2012년 초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2012년도 내에 담배 속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주요쟁점인 담배 속 첨가물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였듯 KT&G 담배제품에는 니코틴 인체흡수를 촉진하는 암모니아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유해성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은 단순히 KT&G 측의 주장만을 신뢰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담배성분 검증절차를 거쳐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담배회사들조차도 담배소송문제에 있어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법원과 보건 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소송대응 전략 및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야할 것이다. 무려 12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집단담배소송에 있어서 외부영향을 철저히 배제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장보다는 근거중심의 소송 진행을 통해 최종 대법원 판결 혹은 미래 담배소송에서는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성규는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고,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University of London)에서 국제보건정책학(Global Health Policy)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Center for Tobacco Control Research and Education(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Global Tobacco Control,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Global Health Policy이며, 현재는 담배회사 내부문건(Tobacco Industry Documents)을 이용한 연구를 하고 있다.

(E-mail: wwwvince77@gmail.com)

김재형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에서 의료사회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Health Policy, Health Social Movement, Health Litigation이며, 현재는 환자단체의 소송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Jaehyung.Kim@ucsf.edu)

김일순은 연세의대 예방의학 명예교수로, 재직기간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를 창립하고 22년간 활동해왔으며, 특히 국내 담배소송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현직에서 은퇴하였지만 금연정책발전을 위해 여전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E-mail: dpmkis@hanmail.net)

참고문헌

- 김일순(2003). 담배연구자료 검토결과. 서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대법원(2011). 2011다 22092 손해배상(기).
- 배금자(1999). 피운사람이 잘못인가, 담배소송편. 인간을 위한 법정. 서울: 책.
- _____(2004). 한국담배소송의 쟁점. *한국의료법학회지*, 12(1), pp.89-110.
- _____(2011). 담배소송의 역사와 전개과정. 부산: 부산지방변호사회.
- 서울고등법원(2011). 2007나 18883 손해배상(기).
- _____(2012). 2012나 19880.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2007). 99가합 104973 손해배상(기).
- _____(1999). 99가합 104973 손해배상(기).
- _____(2005). 2005가합 73599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2009). 2009 가합 863 손해배상(기).
- 이성규(2012). 담배회사의 진실을 들여다 보는 창. 담배회사 내부문건. 보건복지포럼, 185, pp.99-107.
- Bates, C., Connolly, G. N., Jarvis, M.(1999). *Tobacco additives: Cigarette engineering and nicotine addiction*. London: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 British American Tobacco(1995). *Quarterly Competitive Activity Report: Quarter Three 1995*. British American Tobacco. ‘Bates No.’ 500030963-500030980. <http://legacy.library.ucsf.edu/tid/hhc41a99>에서 2011. 11. 2 인출.
- _____(Unknown^a). *Korea*. British American Tobacco. ‘Bates No.’ 500059543-500059555. <http://legacy.library.ucsf.edu/tid/qox08a99>에서 2011. 10. 2 인출.
- 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oration(1995). *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oration 1996-1998 Plan*. Brown & Williamson. ‘Bates No.’ 482303783-482303858. <http://legacy.library.ucsf.edu/tid/gdw12d00>에서 2012. 1. 8 인출.
- _____(Unknown^b). *Informations, Materials*

- and Consultations; Y-1 Tobacco*. Brown & Williamson. ‘Bates No.’ 190227531-190227534. <http://legacy.library.ucsf.edu/tid/lvr11c00>에서 2011. 12. 8 인출.
- Business Risks, I.(1991). *South Korea Market Survey*. RJ Reynolds. ‘Bates No.’ 515221420-515221456. <http://legacy.library.ucsf.edu/tid/wfc03d00>에서 2011. 12. 8 인출.
- Cataldo, J. K., Malone, R. E.(2008). False Promises: The Tobacco Industry, “Low Tar” Cigarettes, and Older Smoker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6, pp.1716-1723.
- Cousins, A. R.(1989). *Technical Survey of South Korean Brands*. British American Tobacco. ‘Bates No.’ 400528169-400528172. <http://legacy.library.ucsf.edu/tid/vec13a99>에서 2011. 12. 22 인출.
- East, J. P., Ford, W., Hawkins, P., Heflin, H., Mattingly, M., McConnell, M., et al.(1985). *USA Senators’ letter to President*. Brown & Williamson. ‘Bates No.’ 516009030-516009031. <http://legacy.library.ucsf.edu/tid/kiq24f00>에서 2011. 12. 22 인출.
- Giovino, G. A., Schooley, M. W., Zhu, B. P., Chrismon, J. H., Tomar, S. L., Peddicord, J. P., et al.(1994). Surveillance for selected tobacco-use behaviors--United States, 1900-1994.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43(3), pp.1-43.
- Glantz, S. A., Barnes, D. E., Bero, L., Hanauer, P., Slade, J.(1995). Looking through a keyhole at the tobacco industry: The Brown and Williamson documents. *Journal of America Medical Association*, 274, pp.219-224.
- Kim, J. H.(1986). *The Korean Tobacco Market*. Philip Morris. ‘Bates No.’ 2500001861-2500001898. <http://legacy.library.ucsf.edu/tid/tey76b00>에서 2011. 12. 12 인출.
- Lee, K., Carpenter, C., Challa, C., Lee, S., Connolly, G. N., Koh, H. K.(2009). The strategic targeting of females by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in South Korea following trade liberalisation. *Globalization and Health*, 5(1),

p.2.

- Lee, S., Ling, P. M., Glantz, S. A.(2012). The vector of the tobacco epidemic: tobacco industry practic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Cancer Causes Control*, 23, pp.117-129
- Leong, M., Pak, I. S.(1991). *New Product Development - Korea*. Philip Morris. ‘Bates No.’ 2504027565-2504027566. <http://legacy.library.ucsf.edu/tid/hey32e00>에서 2011. 12. 12 인출.
- Mackenzie, R., Collin, J., Lee, K.(2003). *The tobacco industry documents: an introductory handbook and resource guide for researchers*. London: 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 Ong, E. K., Glantz, S. A.(2000). Tobacco industry efforts subverting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s second-hand smoke study. *Lancet*, 335(9211), pp.1253-1259.
- Pepples, E.(1985). *Korea*. Brown & Williamson. ‘Bates No.’ 516009043-516009044. <http://legacy.library.ucsf.edu/tid/piq24f00>에서 2012. 1. 15 인출.
- Philip Morris(1989) *Marlboro Red Situation Analysis (Korea)*. Philip Morris. ‘Bates No.’ 2504026063. <http://legacy.library.ucsf.edu/tid/aqq19e00>에서 2012. 1. 15 인출.
- _____ (1990^a). *Korean Cigarette Market Study*. Philip Morris. ‘Bates No.’ 2504034023-2504034055. <http://legacy.library.ucsf.edu/tid/bda42e00>에서 2012. 1. 15 인출.
- _____ (1990^b). *Virginia Slims Below-the-Line Programs Update Hong Kong Taiwan Japan Korea*. Philip Morris. ‘Bates No.’ 2500152276-2500152329. <http://legacy.library.ucsf.edu/tid/sfn19e00>에서 2012. 1. 15 인출.
- _____ (1992). *‘Vanilla’ Cigarettes*. Philip Morris. ‘Bates No.’ 2500114715-2500114735. <http://legacy.library.ucsf.edu/tid/xhd42e00>에서 2012. 1. 15 인출.
- _____ (1993). *Parliament Below-the-Line Programs*. Philip Morris. ‘Bates No.’ 2501222953-2501223015. <http://legacy.library.ucsf.edu/tid/qjs32e00>에서

2011. 11. 26 인출.
- _____ (1999). *Issues Monitor Ingredients Smoke Constituents*. Philip Morris. ‘Bates No.’ 2072346673-2072346678. <http://legacy.library.ucsf.edu/tid/bfh06c00>에서 2011. 11. 16 인출.
- Philip Morris Asia.(Unknown). *Philip Morris Asia Plan*. Philip Morris Asia. ‘Bates No.’ 2500066295. <http://legacy.library.ucsf.edu/tid/ofy76b00>에서 2011. 11. 6 인출.
- Reasor, B. A.(2000^a). *Korea Technical Review 1998-1999/312*. British American Tobacco. ‘Bates No.’ 325189811-325189839. <http://legacy.library.ucsf.edu/tid/wmr72a99>에서 2011. 11. 12 인출.
- _____ (2000^b). *Korea Competitive Monitoring: 1st Quarter 2000/312*. British American Tobacco. ‘Bates No.’ 325189755-325189756. <http://legacy.library.ucsf.edu/tid/umr72a99>에서 2011. 12. 12 인출.
- Song, Y.(2009). *The Impact after Tobacco Market Opening in Korea*.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 Tong, E., Glantz, S. A.(2004). ARTIST (Asian regional tobacco industry scientist team): Philip Morris’ attempt to exert a scientific and regulatory agenda on Asia. *Tobacco Control*, 13(Suppl II), pp.118-124.
-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1964). *Smoking and Health: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to the Surgeon General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US General Accounting Office(1990). *U.S. Trade and Health Issues: Dichotomy Between U.S. Tobacco Export Policy and Antismoking Initiatives.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Washington DC: General Accounting Office.
- Zhang, M.(1999). *Conversation with Dr. Lee of Korean Ginseng and Tobacco Research Institute*. Philip Morris. ‘Bates No.’ 2078584385. <http://legacy.library.ucsf.edu/tid/vpg19c00>에서 2011. 12. 12 인출.

Tobacco Litigation and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Componential Analysis of South Korea's Tobacco Brands

Lee, Sungkyu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Kim, Ja Hyu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Kim, Il Soon

(Yonsei University)

Tobacco litigation affects the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measures. Thus, it is certain that providing valuable evidence and information to tobacco litigation is a vital public health concern. Based on this, the present study searched and analyzed the formerly confidential documents of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that had penetrated South Korea since 1988 to investigate KT&G's nicotine manipulation through additives. After liberalization in South Korea's tobacco market,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initially went through difficulty in creating demand for their brands. To overcome this, the companies targeted the younger generation as their main consumer group, and developed distribution routes for their brands with cigarette vending machines. In addition, the study found that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conducted componential analysis of KT&G's tobacco brands which dominated most of the market share at that time to develop similar brands to them. The result of componential analysis shows that KT&G's brands include ammonia. Also, "lighter" cigarettes were found to contain almost as much tar and nicotine as "regular" brands. Once the first tobacco litigation occurred in 1999, KT&G immediately got in contact with its competitors, other tobacco companies to ask for their advice on tobacco litigation. The finding of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T&G's tobacco brands included additives to help deliver nicotine quickly to the brain. Therefore, the current and future court for tobacco litigation should careful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tobacco additives and tobacco industry's nicotine manipulation before making a judgment. More importantly, the study found that there has been collaboration between tobacco companies on tobacco litigation. Therefore, the court and public health experts should monitor tobacco industry's tactics and practices while tobacco litigation is in progress.

Keywords: Tobacco, Tobacco litigation, Tobacco Industry Documents, Tobacco Ingredient, Tobacco Control